

검 토 보 고 서

연번	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	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	치수과	1
2	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		5

2013년 6월 25일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김 기 영

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
폐지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6월 3일(월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 일자

2013년 6월 7일(금)

4. 관련근거

가. 「하수도법」 제80조(법률 제11690호, 2013.3.23)

나.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43조(대통령령 제23783호, 2012.5.14)

다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5. 폐지사유

상위법인 「하수도법」 및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개정으로, 공공하수도
과태료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
되어 1998년 9월 25일자 조례 제392호로 제정·운영되어 온 「서울특별
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6. 주요내용

- 하수(下水)와 오수(汚水)가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,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「하수도법」 및 「하수도법 시행령」이 개정됨.
- 상위법인 「하수도법」과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등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없음.

7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전면개정(2007.9.27)에 따라 기존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중 제24조(과태료의 부과징수) 제4항 규정이 폐지되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조항이 삭제되어 1998년 9월 25일자 조례 제392호로 제정·운영되어 온 「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으로,
- 그 동안 근거법령인 「하수도법」과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원화 되어 있던 하수(下水)와 오수(汚水)의 관리 체계를 「하수도법」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으며,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43조 [별표 8]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, 부과·징수절차는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42조와 같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※ **관계법령**

■ **하수도법** [시행 2013.3.23.] 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, 타법개정]

제80조(과태료) ① ~ ⑤ (생략)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■ **하수도법 시행령** [시행 2013.5.15] [대통령령 제23783호, 2012.5.14, 일부개정]

제4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■ **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**

제40조(과태료)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,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09.11.11>

제4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) ①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체납 처분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※ **비교표**(하수도법 개정 전·후 법령)

개 정 전	개 정 후
<p>하수도법 제42조(과태료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하수도법 제80조(과태료)</p> <p>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</p>
<p>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</p> <p>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<u>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u></p>	<p>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</p> <p>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<u>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.</u></p>

※ 하수도법 시행령 (폐지 법령)

< 하수도법 시행령 >

제24조 [과태료의 부과·징수]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이의방법·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4.3.17>

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